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
----------	-----

제출년월일 : 2017. 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평창군 봉안시설 확장에 따라 사용 대상자의 범위를 새로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명칭과 사용료를 정비 하고자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명칭 및 위치(안 제9조)
  -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변경 및 명칭추가 (별표1)
    - 평창군 납골단에서 평창군 봉안담으로 명칭변경
    - 평창군 봉안당 명칭신설
- 사용자의 범위(안 제10조)
  - 제10조제3호를 삭제한다.
  - 제10조 제5호, 제6호 본문 중 “봉안담”을 “봉안시설”로 한다
  -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

○ 사용료 등(안 제16조)

- 공설묘지 사용료 인상 (별표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6.10.11.~2016.10.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감사실-11254(2016.10.11))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기획감사실-12363(2016.10.31))
-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주민생활지원과-64102(2016.10.11))
- 5)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감사실-13145(2016.11.16))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제6호 중 “봉안담”을 “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8.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주민등록 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  
[별표 1] 및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평창군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9조관련)

□ 평창군공설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평창군 공설묘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25,678
평창군 공설봉안담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330
평창군 공설봉안당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663.46, 지상2층

□ 읍·면(마을) 공동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평창읍 공동묘지	평창읍 중리 산 11-1번지	9,917.4
	평창읍 노론리 산 84번지	13,223
	평창읍 조동리 산 15번지	8,264.5
	평창읍 약수리 산 7번지	3,669
	평창읍 조둔리 산 73번지	6,611.6
	평창읍 도둔리 산 5번지	2,579
	평창읍 마지1리 산86번지	331
	평창읍 여만리 산 18번지	3,967
	평창읍 후평리 산 7번지	1,652.9
	평창읍 후평리 산 48번지	1,652.9
	평창읍 다수리 산 28번지	1,726
	평창읍 주진리 산 195번지	4,661
	평창읍 용항리 산 78번지	2,083
미탄면 공동묘지	미탄면 창2리 산 46번지	201,813
	미탄면 창3리 산 2-1번지	32,066
	미탄면 울치리 산 59번지	3,273
	미탄면 평안1리 산 74-1번지	409,488
	미탄면 기화리 산 43번지	4,463

명 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방림면 공동묘지	방림면 방림리 산 145번지	1,785
대화면 공동묘지	대화면 상안미2리 산 571-1번지	5,488
봉평면 공동묘지	봉평면 평촌2리 산 40번지 봉평면 유포2리 산 398번지 봉평면 흥정리 산 13번지 봉평면 유포1리 산 89번지 봉평면 원길1리 산 249-1 봉평면 덕거2리 산 173번지	19,834 9,917.4 7,240 5,355 14,876 19,834
용평면 공동묘지	용평면 속사2리 산 128-1 용평면 노동리 산 175번지 용평면 백옥포리 산 28번지	14,281 3,372 2,642
진부면 공동묘지	진부면 하진부5리 산 3번지 진부면 하진부6리 산 16번지 진부면 상진부2리 산 27번지 진부면 송정2리 산 309번지 진부면 두일리 산 66번지 진부면 거문리 산 84번지 진부면 신기리 산 23번지 진부면 마평리 묘지 37번지	24,793 46,017 8,179 14,083 11,207 7,676 3,669 5,928
대관령면 공동묘지 <개정 2006.7.7 : 시행일 2007.9.1>	대관령면 용산리 산 229번지 <개정 2006. 7. 7: 시행일 2007.9.1>	3,305.8

【별표 2】

##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16조제1항관련)

평창군공설묘지(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용료	관리비	비고
분 묘 (매장)	단장 (6.75m <sup>2</sup> )	1,000,000	760,000	240,000	
	합장 (9.9m <sup>2</sup> )	1,500,000	1,140,000	360,000	
봉안당	1구당	200,000	200,000	-	
봉안당	1구당	300,000	300,000	-	

※ 사용년한 : 15년 사용기준임.

읍·면(마을) 공동묘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 용 료	관 리 비
분 묘 (매장)	단장 (6.75m <sup>2</sup> )	4,000	4,000	
	합장 (9.9m <sup>2</sup> )	6,000	6,0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 (사용자의 범위) 공설장사 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p>1. 2. (생 략)</p> <p>3. <u>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창군 관내 사업장내의 분묘에서 발굴 된유골의 매장을 원할 때</u></p> <p>4. (생 략)</p> <p>5. 사망하여 <u>봉안담</u>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p> <p>6. 사망하여 <u>봉안담</u>에 안치되는 자의 70세 이상 된 배우자가 인접한 <u>봉안담</u>을 사전에 임대 하는 경우</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7. (생 략)</p>	<p>제10조 (사용자의 범위)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lt;삭 제&gt;</u></p> <p>4. (현행과 같음)</p> <p>5. ----- <u>봉안시설</u>----- ----- -----</p> <p>6. ----- <u>봉안시설</u> ----- ----- ---- <u>봉안시설</u> ----- -----</p> <p>7. <u>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u></p> <p>8. <u>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주민등록 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u></p> <p>9. (현행 제7호와 같음)</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연락처	(033) 330 - 2309

# 관계법령 발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 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 조성 및 관리 하여야 한다.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설 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 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④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